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교육용 실습심의 실태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교육적 목적에서 실시하는 동물실습은 학생들의 향후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윤리적인 과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 대학학부의 동물실습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고취하고자 한다.

2. 조사배경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기관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95호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이라 함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찰과 시험을 통한 연구, 병성감정,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등 과학실험을 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물실험은 의학, 생명과학, 신약개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습도 포함된다. 이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과학의 목적, 즉 관찰과 실험, 시험, 교육, 재료채취 등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이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윤리위원회 설치대상기관은 334개소이고 이 중 2010년 8월 현재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완료된 기관은 총 282개이다. 이 중 2009년 9월부터 조사한 대학의 윤리위원회는 총 76개 대학이다. 이 조사는 동물단체의 추천을 통한 외부위원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설치가 되지 않은 기관은 전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매년 2월 검역원에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다. 2009년도 실적에 대해 2010년 8월 현재까지 검역원에 통보한 실험기관은 총 259개 이며 2008년도에는 163개 기관에서 실적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윤리위원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거나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검역원에 실적통보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다.

동물복지협회의 추천으로 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증언에 따라 동물실험의 현장에서는 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교육에서의 동물실습은 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의학실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동물실험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해 동물실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용 실험 승인 여부를 조사하였다.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교육에서의 동물실험 현황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984년 캐나다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스웨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차례대로 도입되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한 동물실험의 윤리적 평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 위원회 Europe Commission와 영국 의학 연구 협의회 UK Medical Research Council 같은 연구기금조직은 연구기금을 위해 과학적 평가뿐 아니라 윤리적 평가를 요구한다. 이는 과학연구에서 윤리적 평가 역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판단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며,¹⁾ Science, Nature같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저널들 역시 윤리위원회를 통한 윤리적 평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동물실험이 제대로 윤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은 신물질 개발이나 일종의 안전성 테스트인 독성실험, 생명공학, 의학 연구 등에 쓰인다. 그러나 이런 동물실험은 법적 요구사항과 과학연구논문 제출 시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학문적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윤리적 요구사항으로만 제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동물실험의 경우 그 목적이 현존하는 지식을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전수한다는 데 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실험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와는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험이 교육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논란은 많은 나라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 역시 동물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기에 충분한 대체법이 이미 많이 개발됨으로써 도전받고 있다.

비숙련자인 학생들에 의한 실험이 도덕적 심리적 부담에 비해 얻는 과학적 지식이 없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많다. Keith Spiegel은 "Ethics and academia: Students' view of professors' actions" 에서 482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중 62%가 그들의 교수가 랫트에게 전기쇼크를 주도록 요구했을 때 이것을 비윤리적인 행위로 느꼈다고 답했다. Lord T 와 Moses R은 "College students' opinions about animal dissections"에서 200여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과정에 반대했으며 50% 이상이 고양이와 토끼와 원숭이들에 대한 해부실험이 주어진다면 이를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Bennett, J 는 New survey shows Colorado students want a choice에서 110여명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개를 대

1) Paul Littlefair "The 3Rs' Practice in Protocol Review" 동물실험 윤리위원 워크샵 자료집, 2008

상으로 실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를 거부하겠다고 답했다.²⁾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가지는 거부감과 실습에 대한 정당성 부족은 실지로 현실화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호주의 머독대 수의과대학은 1998년 동물 생체 실습이 포함된 45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동물생체실습을 거부하고 대신 인도적인 대체 실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고 이는 당시 이 학교의 학생이었던 앤드류 나이트의 1년 반에 걸친 반대운동의 결과였다.³⁾

이는 실험자의 자격, 특히 학교교육에서 실시되는 동물실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은 이미 1876년 The Cruelty to Animals Act 에 의해 동물에 대한 수술실습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1986년 the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에 의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살아있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실습이 금지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은 동물해부의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고등학생까지의 살아있는 동물실습과 해부는 금지되어 있으며 동등한 가치의 결과를 내는 대안법이 있는 한에서 동물실험은 금지하고 있다.⁴⁾ 독일의 경우 수의학 또는 의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해 동물실험 연구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9조 1항)

학생실습에 대한 거부운동과 각국의 제한규정마련 움직임은 학생 실습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랜 기간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의 실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적 교육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실습은 대부분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셋째, 학생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극심할 수 있고 넷째, 향후 의사, 과학자 등 전문가가 될 학생들의 경우 교육기간 동안의 실습을 통해 생명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고 이런 심리적 경향이 추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조사과정

2009년 7월에서 8월까지 전국의 의대와 수의대를 대상으로 학부과정의 동물 실습을 승인 받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각 대학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송부하였고 그 중 3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승인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설문지의 결과 두 가지 면에서 보완점이 필요했다. 첫째, 윤리위원회 측 답변에 대한 진실성과 실지 승인현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동물실습은 의대와 수의대뿐 아니라 생명공학, 생물학, 약학과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2009년 11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의대와 수의대뿐 아니라 생명공학 생물학과 등이 있는 대학으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전국에 윤리위원회 설치대상 기관 중 검역원을 통해 외부위원

2) Jonathan Balcombe, Ph.D, Attitude Toward Dissection: Annotated List of Studies,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1997.

3) "Learning Without Killing: A Guide to Conscientious Objection"에는 앤드류 나이트를 비롯, 독일,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15명의 수의학도가 생체실험을 거부하고 대체법을 도입한 성공담이 실려있다. Edited by Andrew Knight BSc,BVMS, 2002, www,interniche.org

4) Jonathan Balcombe Ph.D, The use of Animals in Higher Education , Human Society Press, P76

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을 선정, 동물단체를 통해 대학에 추천 받은 71명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중 18개 대학의 외부위원들이 학부생들의 실습승인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외부위원들과의 인터뷰가 3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실습승인을 받고 있다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측의 설문지 답변과는 모순되는 결과이다. 또한 10개 대학 위원은 학부실습과목의 승인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위원들이 해당 대학의 동물실험 규모와 운영체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 대상 중 18개 대학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현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를 통해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윤리위원회제가 의무화됨으로써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터뷰는 외부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승인여부이기 때문에 실지 학부실습과목의 존재여부와 실질적인 승인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었고 2010년 3월에서 4월까지 학부실습과목의 실질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조사했다. 커리큘럼 조사는 일차적으로 과사무실과 조교들과의 인터뷰를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조교들이 현황을 모를 경우 각 연구실, 교수, 졸업생, 대학원생 등을 통해 실습여부를 조사했다.

II. 동물실습 계획서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상태

1. 조사결과

조사결과 학부실습은 크게 의대와 약대의 독성실험, 생물학과 생명공학과와 해부실습, 그리고 수의대에서는 독성실험과 해부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대의 경우 졸업생과 현직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실습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의대내의 동물실험이 줄어들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다.⁵⁾ 또한 생명공학과 생물학의 경우 고학년보다 1학년 교양시간의 생물학 및 실습 시간에 하는 개구리 마우스 해부실습이 가장 일반적인 실습과목이었다.

각 대학의 실습과목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외부위원의 인터뷰와 비교 검토하여 실습과목 승인 여부를 조사했다. 실습과목의 승인여부 조사는 1차 설문조사 시 실습승인 받지 않는다고 밝힌 3개 대학과 외부위원을 알 수 없어 인터뷰를 하지 못한 대학 2개를 제외하고 의대, 수의대, 생명공학과 생물학과 약대가 있는 대학 7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음은 외부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진 학부실습이 승인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대학의 사례이다.

사례) J대학의 경우 2010년 2월 15일 외부위원과 통화. 학부실습서류 본 적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3월 19일 생명공학과 조교와 통화, 생리학 시간에 마우스 개구리 해부 실습하고 있

5)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 (Physician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 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의대에서의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습은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뀌어 왔고 현재 미국의 126개 의대의 절반에는 동물실습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Jonathan Balcombe, 앞의 글, P 58

음을 확인했으며 약학부 교수와의 통화를 통해 약학부에서도 해부 실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결론: 실지로 학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과목이 있으나 외부위원이 서류를 본 적이 없으므로 그 해당과목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실시된 것으로 보임.

다음은 76개 대학의 실습승인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2010년 4월 기준) 이 조사결과는 외부위원, 각 과의 조교 및 담당교수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체적인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류	기준	대학
학부실습과목을 승인 받고 있는 대학 20개	외부위원이 학부실습과목 서류 승인여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	서울대, 건국대, 충남대일부, 충북대, 전남대, 경북대, 가톨릭대, 고려대, 이대의대, 단국대, 동아대, 계명대, 대구 카톨릭대(위원장승인), 송실대, 숙명여대, 대전보건대, 충북 도립대, 폴리텍바이오 대학, 서정대
학부실습과목을 승인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 22개	외부위원이 학부실습과목을 승인한 적이 없거나 승인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실습과목 조사 이후 학부실습과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 경우는 학부실습과목을 승인 받고 있지 않고 있거나 승인 받아야 할 과목 전체규모에 대해 외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전북대, 강원대, 경상대, 중앙대, 한림대, 순천향대, 부산대, 경희대, 이화여대, 가천 의대, 을지대, 고신대, 삼육대, 국민대, 서강대, 포항공대, 세명대, 대전대, 목원대, 우석대, 신구대, 창원대, 동의대
학부실습과목 승인여부 불투명한 대학 7개	실습과목현황파악이 어렵거나 외부위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실습과목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으나 불명확하게 대답한 경우, 외부위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성균관대, 동국대 경주, 덕성여대, 연대 원주캠퍼스, 호서대, 대구한의대 경산캠퍼스, 원광대
윤리위원회가 6개월 이상 열리지 않은 대학 13개	윤리위원회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열리지 않아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 조사결과 이 대학에는 모두 동물실습과목이 있었으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학부과목이 전부 승인 받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아주대, 인제대, 강릉원주대치대, 대진대, 성신여대, 상지영서대, 한남대, 군산대, 서울시립대, 서울호서전문대, 서울여대, 상지대

윤리위원회가 최근 만들어진 대학 4개	최근 6개월 안에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우	인하대, 부산 카톨릭대, 세종대, 영남대경산캠퍼스
윤리위원회 있으나 아직 외부위원을 추천 받지 못한 대학 1개		조선대
학부실습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9개	대학의 각과 중 동물실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에 문의했으나 실습과목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영남대 대명동캠퍼스, 차의과 대학, 남서울대, 전주대, 인천대, 유한대, 진주산업대, 건양대, 남부대

2. 문제점

1) 동물실습을 심의 받지 않는 이유

외부위원과의 인터뷰 이후 동물실습을 승인 받지 않는 몇 개 대학의 윤리위원회장과 외부위원들을 통해 그 이유를 질문했다.

- ▶ 승인 받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교수들의 인식부족으로 (J대, H대)
- ▶ 검역원에서 제시한 표준 자료를 통해 서류를 만드는데 검역원 자료에 과제명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어 학부과목의 경우 승인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 (S대)
- ▶ 검토할 서류가 너무 많아 교수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S대)
- ▶ 제도 초기라 역량이 되지 않고 실험실이 두 개로 나뉘어 있고 연구중심이다 보니(K대)
- ▶ 승인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마릿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S대 외부위원)
- ▶ 자체기준(해부실습은 고통등급이 낮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고 지속적인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는 3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에 따라서 심사함 (K대)

2) 승인 받고 있으나 절차의 문제

D대학의 경우 위원장만이 학부실습을 승인하고 있어 외부위원이 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미국국립보건원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나라와 기관의 현황에 따라 운용 가능하나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더라도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외부위원들이 동물실험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학부실험 승인서류를 본 위원들도 그것이 전체적인 규모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실지로 “학부실험과목을 승인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몰라 자신이 본 서류가 전부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C대) 이는 위원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승인 받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승인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승인 받고 있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S대) 이러한 부분적 승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승인에 대한 강제적 규정이 없다면 다른 학교의 경우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또한 외부위원들과의 인터뷰 결과 일부 위원들은 자신이 승인한 서류 중 어떤 것이 학부실험인지 과연 학부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험의 규모와 체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부위원은 자신이 활동하는 기관의 성격과 동물실험의 규모 운영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 비전문가인 외부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 추후 재교육시 이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외부위원의 승인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법률부재의 문제

개정 동물보호법 1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험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제 26조에 의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실험이 제대로 승인 받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규정이 없다. 현행법 상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6조 3항)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연구실험의 경우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으면 연구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생들의 교육용 실험과목의 경우 이런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대학에서 교육 전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위원회 승인의 의미는 의학실험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 윤리적 기초를 배워야 산업 현장/연구실로 나아가 산업화된 동물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대체 소재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고 생체실험을 줄이는 노력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윤리위원회에서의 윤리적 평가를 통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법에서 규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립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각 실험기관은 우선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실험자들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윤리위원회 참여자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험기관과 윤리위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본 제도의 취지를 제대

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에 대하여 위원회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미국의 NIH가이드 라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비 수여기관에서는 연구비 지급 기준에서 위원회 승인서 부착을 의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할 때 윤리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의무라면 이는 각 나라의 처지에 맞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물실험의 윤리적 검토의 신뢰성과 효과를 위해 윤리적 검토과정이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은 의미 심장하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며 그들의 권고가 실제 과정에서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⁶⁾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동물을 지각력있는 존재로 대우하려는 노력은 실험실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IV. 부록-외부위원의 역할과 임무

영국의 RSPCA는 윤리위원 내부에서 외부위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서포트하기 위한 포럼을 부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두 번에 걸쳐 보고서로 출간되었고 이는 외부위원의 활동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3년에 출간된 "A Resource book for lay members of Local Ethical Review Process" 와 2009년에 출간된 보고서 "Resource book for lay members of Ethical Review Process 2th Edition", July 2009)를 참고로 외부위원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정리했다.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외부위원

1) 윤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의 역할

"외부위원의 역할은 과학적 해결책이 아니라 윤리적 역할이다."

조사결과 외부위원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다. 외부위원과의 인터뷰 중 많은 위원들이 학부실습승인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성격과 전체동물실험의 규모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위원의 역할은 동물이용의 정당화가 엄격하게 평가 받도록 하여 기관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동물실험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통념의 압박을 가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위원은 실험종사자들이 직접 묻지 않는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방식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위원의 역할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속한 각 성원들이 유념해야 할 전제가 있다.

6) "Principles and Practice in Ethical Review of Animal Experiments Across Europe" A Report prepared by FELASA Working Group on Ethical Evaluation of Animal Experiments, p1,2005, <http://www.felasa.org/recommendations.htm>

실험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용어를 일반인의 시각에 최대한 맞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은 자신이 고려해야 할 특정 이슈에 관한 전문성 부족에 자신감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외부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어떠한 심리적 압박도 가해져서는 안 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부담감과 심리적 압력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과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외부위원의 활동 시 주의사항

외부위원은 자신이 실험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이후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때 항시적으로 실험자, 위원장과 이에 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는 실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부위원과 수의사인 외부위원들이 있다. 위원회 내부뿐 아니라 다른 과학자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과학연구의 세부적인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연구과제이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인적 사항 등이 누구인지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언을 받은 외부의 과학자는 그 연구수행자가 자신이 짐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원회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내의 누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위원회 내부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외부위원은 기관에 추천 받고 첫 미팅을 가지게 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그 기관의 성격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기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 76개 대학의 실습 조사 결과 2009년에서 2010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23개의 대학에서 학부실습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제는 인터뷰를 실시했던 71명의 위원들 중 10명은 승인여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18명은 서류를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외부위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가 누락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에 추천 받은 외부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해당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과 실습의 종류와 규모, 위원회 내부에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등 실험의 종류와 운영방식에 대해 미리 질문해 외부위원이 파악하지 못한 실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위원회의 운영

기관의 규모 실험의 전체적 양에 따라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지로 S대의 경우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학부실습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Y대와 K대의 경우 위원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실습서류가 완벽하게 승인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서류 량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RSPCA 역시 기관의 규모에 따라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큰 규모 대학의 경우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이슈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에서 포괄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고 과별로 하부위원회를 두는 등 보다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는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내부전문위원을 별도로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서류는 이후 반드시 모든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전

문위원검토의 필요성과 어떤 기준에서 어떤 서류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외부위원의 교육

현재 외부위원 윤리위원의 교육은 검역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동물보호정책과 동물실험윤리제도,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이다. 이 교육내용은 동물복지의 개념과 동물실험에서의 윤리적 평가, 그리고 실험에서의 실무적 지식을 알려주는 내용이나 동물실험의 경험이 없고 관련과학에 지식이 없는 외부위원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해 검토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외부위원들의 현장경험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재교육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고시개정을 통해 (제 2009-14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과목이 포함되었다. 이 과목에서 외부위원의 역할과 임무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ndrew Knight BSC.,BVMS, Learning Without Killing: A Guide to Conscientious Objection www.interniche.org, April 2002

Jane A Smith Maggy Jennings, A resource book for lay members of Local Ethical Review Processes, January2003

OLAW, Public Health Service Policy on Human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Jonathan Balcombe, The use of Animals in Higher Education, HS press, 2000

RSPCA, Ethical Review course manual-Poland, 2006

RSPCA, Guiding principles on good practice for Ethical Review Processes, 2th Edition, July2010

RSPCA, resource book for lay members of Ethical Review Processes, 2th edition, July 2009

FELASA, Principles and Practice in Ethical Review of Animal Experiments Across Europe- A Report prepared by FELASA Working Group on Ethical Evaluation of Animal Experiments, <http://www.felasa.org/recommendations.htm>

